

대전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가합1102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988,099원 및 그중 217,878,542원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11. 13.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강원 영월군 D 대 496㎡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2020. 3.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3. 30. 접수 제3513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 각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1보증

보증서 발급일: 2019. 4. 12. 보증기한: 2020. 4. 10. 보증금액: 127,500,000원

○ 2보증

보증서 발급일: 2019. 4. 12. 보증기한: 2020. 4. 10. 보증금액: 85,000,000원2)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의 1보증에 기하여 150,000,000원을, 2보증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20. 9. 22. 1보증에 따라 130,998,718원을, 2보증에 따라 86,879,8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1보증에 대하여는 1,151,480원, 2보증에 대하여는 767,650원이 각 추가보증료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으로 190,427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0. 9. 23.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9,988,099원(각

대위변제금 + 추가보증료 + 대지급금) 및 그중 대위변제금 합계 217,878,5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20. 9.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1. 13.까지 약정에 따라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영월군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1) 강원 영월군 D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였는데, 202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2020. 3. 30.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피고 C는 피고 B의 형수이다.
- 3) 위 매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외 달리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쟁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와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진정한 계약이든, 허위계약이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모른 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 2) 앞선 인정사실들에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를 적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하고, 피고 B의 무자력이 인정되며,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진정한 매매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3) 피고 B의 사해의사 인정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피고 C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0. 3. 25. 딸인 E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고, E이 같은 날 피고 B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가 2020. 3. 26.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E에게 2020. 3. 25. 저녁 8시 40분 넘어 위 400만 원을, E이 피고 B에게 같은 날 저녁 8시 52분 넘어 위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는 E에게 다음 날 오전 10시 19분경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4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지급 시간 및 지급 방법(피고 C는 1일 이체한도가 300만 원이어서 딸에게 300만 원, 100만 원 2번에 나누어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다음 날 1,000만 원을 1번에 송금하기도 하였다)에 있어 그 자체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일 및 등기 경료일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발생일로부터 17일 정도 전이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20. 5. 29. 이 사건 토지의 구입 경위를 묻는 원고에게, 시어른이 살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현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임대료 없이 지상 건물에서 거주한다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형수인 피고 C가 위 시기에 시동생인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시모를 살게 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C에 관한 사해의사는 여전히 그 추정이 유지되고, 피고 C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와 피고 B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신혜영, 판사 박서우, 판사 송현섭